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전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 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40,000원	26,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500원/1km	1,000원/1km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95,500원	63,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2,300원/1km	1,500원/1km
공통	할증요금 (평일 18:00~ 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6,000원/10분	

-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름.
3. “대기요금”은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
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으로 출동 및 처지 기록지의 “기관도착 연월
일”부터 “이송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며,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후부터 10분 단위로 책정함.
4. 선박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승선하여 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함. 다만, 도선
료,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 부과 가능함.
5.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이송처치료 영수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영수증번호		결제방법	[] 현금 [] 카드 [] 기타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번호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		운용기관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성명	
차량 주행 거리	Km	구급차탑승시간	YYYY-MM-DD HH:MM
		기관도착시간	YYYY-MM-DD HH:MM
		환자인계시간	YYYY-MM-DD HH:MM

이송처치료 세부내역

구 분		①기본요금 (10km 이내)	②추가요금 (10km 초과 시)	③할증요금 (평일 야간 및 토요일 · 일요일·공휴일 이용 시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④대기요금 (기관도착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 산정)
법 제4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일반 구급차	[] 40,000원	[] ____km x 1,500원	[] 8,000원 [] ____km x 300원	[] 대기시간 ____분 [] 단위 ____ x 6,000원
	특수 구급차	[] 95,500원	[] ____km x 2,300원	[] 19,100원 [] ____km x 460원	[] 대기시간 ____분 [] 단위 ____ x 6,000원
법 제4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 26,600원	[] ____km x 1,000원	[] 5,320원 [] ____km x 200원	[] 대기시간 ____분 [] 단위 ____ x 6,000원
	특수 구급차	[] 63,600원	[] ____km x 1,500원	[] 12,720원 [] ____km x 300원	[] 대기시간 ____분 [] 단위 ____ x 6,000원

이송처치료 총액(①+②+③+④)

이송 중 처치내용			원
이용자명	(서명)	이용자 생년월일	
납부자명	(서명)	이용자와의 관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송기관명

직인

[할증요금 적용 기준]

- * 평일 야간: 18:00 ~ 다음날 09: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전일(00:00~24:00)

[대기시간 적용 단위]

대기시간	적용 단위	대기시간	적용 단위
~30분	0	30분 1초~40분	1
40분 1초~50분	2	50분 1초~60분	3
60분 1초~70분	4	70분 1초~80분	5
* 이상 10분 단위로 적용 단위 1씩 증가			